

예 산 총 칙

제 1 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855,807,943 | 25,674,233 |
| 일 반 회 계 | 688,852,515 | 20,665,575 |
| 특 별 회 계 | 166,955,428 | 5,008,658 |
| 공 기 업 특 별 회 계 | 82,388,321 | 2,471,649 |
| ○ 상수도사업 | 57,950,242 | 1,738,507 |
| ○ 하수도사업 | 24,438,079 | 733,142 |
| 기 타 특 별 회 계 | 84,567,107 | 2,537,009 |
| ○ 의료급여 | 2,488,008 | 74,640 |
| ○ 도시개발 | 8,348,289 | 250,448 |
| ○ 밤일지구도시개발 | 720 | 21 |
| ○ 기반시설 | 287,836 | 8,635 |
| ○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| 25,768,070 | 773,042 |
| ○ 도시재정비촉진 | 7,566,564 | 226,996 |
| ○ 도시교통사업 | 16,292,760 | 488,782 |
| ○ 생활폐기물처리시설 | 19,868,412 | 596,052 |
| ○ 도시재생 | 3,946,448 | 118,393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『세입·세출 예산』 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,630,099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2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, 재해 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